

# 회의 의 사 록

회의 명	2021-2차 대학평의원회	회의일시	2021. 11. 02
재적위원	참석 : 박종걸 원영희 박태수 임지영 이한영 신지수 임환석 최지은 최정권 백민석 (총 10명) 불참 : 최유미 박희연(총 2명)	회의장소	서면결의
		기록자	김현동 간사
회의 안건 및 배포자료	- 학칙 개정(안)		

## 회의 내용

위원회 관리규정 제6조의 3항에 의거하여 [위원회 관리규정 제6조의③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]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 9명이 서면결의로 아래와 같이 승인하다.

### <서면 의결사항>

- 학칙 개정 \_ 원안대로 승인

### ◎ 학칙 개정(안)

#### 1. 개정취지

- 가. 학령기 학생 중심의 대학 체제에서 성인 학습자 친화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습자에게 유연한 교육 및 학사제도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연한 제한을 확대하고자 함
- 나. 본교 학기개시일과 개강일이 상이하여, 수업료 환불 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학기개시일 및 개강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함
- 다.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최저이수학점보다 본교 수강신청 최소학점이 더 커서 기준 준수를 위한 개정이 필요함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제4조의 재학연한 확대
- 나. 제5조에 학기 개시일 재정의
- 다. 제42조의 수강신청 최소학점 삭제

# 회의의사록

회의명	2021-2차 대학평의원회	회의일시	2021. 11. 02
재적위원	참석 : 박종걸 원영희 박태수 임지영 이한영 신지수 임환석 최지은 최정권 백민석 (총 10명) 불참 : 최유미 박희연(총 2명)	회의장소	서면결의
		기록자	김현동 간사

### 3. 신규대조문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<b>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</b> ① 각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<u>6년</u>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장애학생의 재학 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.(개정2012. 06. 08)(개정17.06.09.)(개정20.11.06.)</p> <p>1. 편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이미 지난 재학연한을 합산한다.(개정2012. 06. 08)(개정17.06.09.)</p> <p>2.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.(개정2012. 06. 08)</p> <p>3. 삭제(개정 15.02.06)</p>	<p><b>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</b> ① 각 학부의 수업연한은 4년(8학기)으로 하고 재학 연한은 <u>8년</u>을 초과할 수 없다. <b>단, 재학연한은 총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</b>(개정2012. 06. 08)(개정17.06.09.)(개정20.11.06.)</p> <p>1. 편입학 학생의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<u>없고</u>,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이미 지난 재학연한을 합산한다.(개정2012. 06. 08)(개정17.06.09.)</p> <p>2.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.(개정2012. 06. 08)</p> <p>3. 삭제(개정 15.02.06)</p>	<p>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자 재학연한 확대</p>
<p><b>제5조(학년·학기)</b> ① <u>학년</u>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</p> <p>② <u>학년</u>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.                  제1학기 :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                제2학기 :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                단, 필요에 따라 계절수업을 둘 수 있으며, 계절 학기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또한 제2학기의 시작은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</p>	<p><b>제5조(학년·학기)</b> ① <u>학년도</u>는 3월 1일부터 <u>다음 연도 2월 말일</u>까지로 한다.</p> <p>② 학기는 매 <u>학년도 2학기로 정하며 교육상 필요에 따라 계절 학기를 둘 수 있다.</u> 계절 학기 운영에 관한 <u>사항</u>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③ <u>각 학기의 학기개시일과 개강일은 학년도마다 총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	<p>수업료 반환 기준일을 학칙에서 규정하는 학기개시일과 맞추기 위해, 학기개시일 및 개강일 재정의</p>
<p><b>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</b> ① 학생은 매 학기 <u>15학점 이상 21학점</u>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다만 <u>유급</u>에 따른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u>본 학점 산입</u>에 밀알훈련 및 전도훈련과 실용영어 학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 17</p>	<p><b>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</b> ① 학생은 매 학기 <u>최대 21학점</u>까지 신청할 수 있다. 다만 <u>과목유급</u>에 따른 학점등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u>최대 신청학점에</u> 밀알훈련 및 전도훈련과 실용영어 학점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직전학기 성적 17</p>	<p>국가장학금 최저이수학점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신청학점 보완</p>

## 회의의사록

회의명	2021-2차 대학평의원회	회의일시	2021. 11. 02
재적위원	참석 : 박종걸 원영희 박태수 임지영 이한영 신지수 임환석 최지은 최정권 백민석 (총 10명) 불참 : 최유미 박희연(총 2명)	회의장소	서면결의
		기록자	김현동 간사

현행	개정	개정사유
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.7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 4.0이상인 학생은 25학점까지 수강 신청 할 수 있다. (개정 2011. 08. 05.) (개정 17.04.07.)(개정 17.06. 09.)(개정20.01.03.) ② ~③ (생략)	학점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.7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 4.0이상인 학생은 25학점까지 수강 신청 할 수 있다. (개정 2011. 08. 05.) (개정 17.04.07.)(개정 17.06. 09.)(개정20.01.03.) ② ~③ (생략)	
	<b>부 칙</b> 1.(시행일) 본 규정은 2021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.	

서면 결의자		의장 박종걸		부의장 원영희
	박태수	임지영	이한영	신지수
	임환석	최지은	최정권	백민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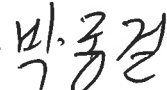
# 서면결의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원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원회 의장 박종걸 인(서명) 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# 서면결의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원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원회 부의장 원영희 인(서명)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# 서면결의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회 위원 박태수 인(서명)

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 귀하

# 서 면 결 의 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회 위원 임지영 인(서명)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 귀하

# 서면결의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회 위원 이한영 인(서명)

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 귀하



# 서 면 결 의 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회 위원 신지수 인(서명)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 귀하

# 서면결의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회 위원 임환석 인(서명)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회 의장 귀하

# 서면결의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원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원회 위원


최지은 인

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# 서면결의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원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원회 위원 최정권 인(서명) 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

# 서면결의서

- 회의명 : 2021년 3차 대학평의원회
- 의결기한(회의일시) : 2021. 11. 02
- 서면결의사유 :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
- 안건별 의결내용

안건명	의결내용 可(○), 否(×)	의결이유 또는 의견
1. 학칙 개정(안) - 제4조(수업 및 재학연한) - 제5조(학년·학기) - 제42조(학기당 취득학점)	○	

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.

2021년 11월 02일

대학평의원회 위원 백민석 인(백민석)

한국성서대학교 대학평의원회 의장 귀하